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의 활성화 방안

- 국내 ADR 기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Promoting an Arbitr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ses

이 주 연*
Ju-Yeon Lee

〈 목 차 〉

I. 서론	V. 국내 중재기관의 활성화 방안
II.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및 특성	VI. 결론
III.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ADR의 적합성	참고문헌
IV.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ADR 기관의 현황	Abstract

주제어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체적분쟁해결제도, 국내외 중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국제통상학 박사, jylee@kiip.re.kr

I. 서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이 발달하면서 정보, 지식 및 기술과 결합된 인간의 지적 창조능력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발전하여 확대·재생산되면서,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¹⁾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글로벌화에 따라 지식재산권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 창출 및 발전하고 있어 국제적인 양상을 강하게 띠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이 일상화된 오늘날 지식재산과 관련한 국제분쟁의 가능성은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쟁기업들은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의 경우는 수출중단,²⁾ 판매금지,³⁾ 이미지 하락(copypat)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인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의 주요 상대국인 미국에서는 최근 특허 소송의 배상이 고액화 되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급격히 높아져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누가 어떤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지 결정하고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에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으나,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의 국제적 성격이 강해지고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가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소송제도만으로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점이 많아짐에 따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⁵⁾

1) 2008년 Ned Davi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S&P 500대 기업의 시장가치(market value)는 유형자산 대비 무형자산의 비중이 1985년 32% 수준에서 1995년에는 68%, 2005년 80%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5년 10%, 1995년 20%, 2005년 40%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5년 기준으로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 국내 MP3 수출 중견기업 A사는 외국 기업의 특허침해 경고장 수령 후 이에 대한 대응 미흡 및 부담으로 인해 미국수출 포기(채명석, “막대한 특허분쟁 소송비 내느니 차라리 美 시장 포기”, 「아시아경제」, 2008.2.20자, 접속일 2013.4.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22014525664405>)

3) 코오롱-듀폰 소송에서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20년간 판매금지 판결(12.8.30).

4) 정효진, “높아진 지식재산권 장벽”, 「동아일보」, 2009.10.8자, 접속일 2013.4.18,
<http://m.donga.com/List/3/70050000000054/20051214/8256727/1>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ADR 제도에 대한 국내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우선 지식재산권 분쟁의 특성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ADR의 적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 ADR 기관에 대한 각각의 면모를 간단히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재가 제공하는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경쟁우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및 특성

1.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및 분쟁의 증가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 수 있는데 산업재산권은 물질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로서 산업기술 발전과 관련이 깊으며, 저작권은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로서 문화·예술영역의 발전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산업정책이나 문화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⁶⁾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성립, 소멸과 그 내용은 그 지적재산권을 부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서만 결정되고 그 효력은 부여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만 인정되는 속성을 말한다.”⁷⁾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각 국가의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권리로서 보호받고 있다고 하여도 그 권리가 다른 국가에서까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과는 달리, 지식재산은 세계적 무역자유화 조치와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는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권리자의 보호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국제사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기술, 디자인, 학문적 성과물 등은 국가 간에 쉽게 이동하거나 이전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만의 규제로는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로 꼽

5) 김용길, “지식재산권분쟁의 재판의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 p.68.

6)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성립, 소멸과 그 내용은 그 지적재산권을 부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서만 결정되고 그 효력은 부여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만 인정되는 속성을 말한다(손경한, “국제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p.73).

7) 손경한, “국제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p.73.

히고 있다.⁸⁾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권분야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국제적 보호규제가 필요함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883)을 필두로 하여 베른협약(1886) 등 국제조약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이 시작되었다.⁹⁾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들은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가맹국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개정회의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통일법의 틀을 정착시켜왔다. 이후 1994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발효된 후에는 WTO의 회원국¹⁰⁾에 한하여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의 수준을 초월하여 지식재산권 법제가 일정한 수준에서 통일화(harmonization)되게 되었다.

WTO/TRIPS 체제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도 국제적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국가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지식재산권이 곧 자산이라는 관점의 변화도 지식재산권 분쟁의 증가현상을 더하여 주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커지면서, 누가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시장선점 또는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경쟁기업을 공격하여 시장을 방어하는 이른바 지식재산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세계 지식재산 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애플-삼성 특허소송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최근 일본, 미국 등 해외 기술선진 기업들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겨냥해 특허공세가 심화되고 있다.¹¹⁾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분쟁은 '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증추세이며,¹²⁾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이재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규제체제",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p.293.

9) 박영길, "동북아 지적재산권분쟁해결을 위한 ADR센터 필요성에 관하여",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3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 pp.89-99 재인용; 紋谷暢男, 「知的財産權法概論」, 2009, p.358; 이재곤, 전제논문, p.293.

10) 2013년 2월 기준으로 WTO 가입국은 158개국이다.

11) 장성원, "ADR을 통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국제중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과학기술원」, 2006, p.13.

1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분쟁 건수는 '07년 201건, '08년 181건, '09년 154건, '11년 278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식재산권 분쟁의 특성

지식재산권은 지식 내지 정보라는 무체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바, 무체물인 지식 내 정보는 비배타적, 비경합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¹³⁾ 지식재산을 구체화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만 갖추어지기만 하면 이전이 쉽고 정당한 권리자를 우회하는 침해가 용이하며, 침해에 해당여부 및 침해의 정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법정소송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ADR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특성에 따른 적합한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전문성

우선 지식재산권 분쟁은 전문성을 갖는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¹⁴⁾ 정보, 지식, 기술과 관련이 깊어 지식재산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복잡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 지식 및 기술과 결합된 인간의 지적 창조능력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발전하여 확대·재생산되면서, 분쟁 해결자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정보, 지식, 기술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법률적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¹⁵⁾

(2) 국제성

지식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구체화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만 갖추어 지기만 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용될 수 있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국경을 초월한 국제성을 갖는다.¹⁶⁾

(3) 신속성

지식재산권 분쟁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신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정보, 지식, 기

13) 김상찬·이언화, 전계논문, p.97.

14) '지식재산권의 정의', 「위키피디아(다국적 온라인 백과사전)」, 접속일 2013.4.22, <http://ko.wikipedia.org/wiki/%EC%A7%80%EC%8B%9D%EC%9E%AC%EC%82%B0%EA%B6%8C>

15) 윤선희, "일본에서의 지적재산 관련 중재제도", 「법조」, 제573권, 법조협회, 2004, p.189.

16) 김용길, 전계논문, p.70.

술에 기반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으며, 특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경우는 신제품의 출연속도나 제품의 수명주기(life-cycle)가 짧아 지식재산권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전통적인 시간에 비해 상당히 짧다.

(4) 비공개성

지식재산권 관련한 분쟁은 신속한 해결과 해결과정에서 비밀보호가 특히 요구된다.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갖는 공개적인 법정에서는 절차진행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¹⁷⁾ 기업의 경우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한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III.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중재의 적합성

1.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방법

지식재산권 분쟁은 성립된 권리의 무효다툼, 양도양수의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¹⁸⁾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실시 또는 사용하거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등의 행위를 통해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한 다툼에서 분쟁이 시작된다. 국가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분쟁해결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분쟁의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재판에 의해 분쟁을 처리하는 소송과 재판외 분쟁처리 또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구별할 수 있다.¹⁹⁾ [표 1]은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에서는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17) 김상찬·이언화, 전계논문, p.97; 김용길, 전계논문, p.70.

18) 우광명·서민교, 전계논문, p.270.

19) 박영길, 전계논문, p.93.

[표 1] 분쟁해결 방법 비교

특징	(1) 소송	(2) ADR 제도		
		협상	조정	중재
자발성	비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판정의 효력	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있음 (항소 가능)	합의하에 계약으로서 집행가능	합의하에 계약으로서 집행가능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한된 경우 재심 가능)
효력의 범위	국내적 (영토 내에 있는 내국인에게 그 효력이 미침)	국제적	국제적	국제적 (자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효력이 미침)
제3자 (해결자)	법관이 판결함 (일반적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 없음)	없음	당사자 선정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상거래에 정통한 전문가)이 관정함
형식성	형식적 (고도로 구조화된 규칙에 따른 진행)	비형식적, 비구조화	비형식적, 비구조화	형식성이 덜함 (당사자가 절차규칙과 실제법 선택하여 진행)
절차 특성	증거와 주장의 제출 기회	증거, 주장, 이해의 무한정 제출	증거, 주장, 이해의 무한정 제출	증거와 주장의 제출 기회
결과물	원칙적 결정, 의견서에 의해 뒷받침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	의견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원칙적 결정이나 의견서 없는 타협안
공개 여부	공개주의 원칙	사적임	사적임	사적임 (사법부 재심의 경우 공개)

자료 : 장성원, "ADR을 통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국제중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과학기술원(2006: 16)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1) 재판에 의한 해결: 소송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전통적으로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소송은 국가 재판권에 기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 규정에 따른 판결에 의해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재판절차는 절차법인 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²⁰⁾ 고비용의 부담이 있다.

20) 오석웅, "지적재산권분쟁과 중재제도",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2호, 한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경우는 금전적 비용이 엄청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의 총 비용은 10만 달러를 초과하며, 특허분쟁의 경우 백만 달러를 훌쩍 넘는 분쟁으로 수년이 걸린다.²¹⁾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2009)에 따르면 미국 특허소송의 평균 비용은 약 300만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삼성-애플 소송에서 10.5억달러 손해배상 평결(12.8.25)이 나기도 하였다. 더욱이 소송의 높은 경쟁적 특성은 당사자들에게 클레임을 과대하게 고려하도록 조장함에 따라, 소송의 기간이 장기화 및 고비용의 악순환을 유도한다.²²⁾

더욱이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은 국제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때 재판관할권, 준거법,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²³⁾ 각 국가의 법에 근거한 분쟁처리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정치체제, 경제사회 상황, 문화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국의 법원이 아닌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 미묘한 민족감정이나 상이한 사법제도로 인하여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²⁴⁾ 이러한 이유로 소송중심주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ADR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국가와 투자자 간 분쟁 등 공적 분쟁도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추세이다.²⁵⁾

(2) 재판외 분쟁해결 : ADR(협상, 조정, 중재)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인 ADR은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들 가운데 소송을 제외한 협상, 조정, 중재 등을 일컫는 용어를 말한다. ADR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원소송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²⁶⁾ 다양화 및 전문화되고 있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 이용이 높아지고 있다.²⁷⁾ 소송의 경우 엄격한 법·규정에 구속되어 판단을 내리지만, ADR 제도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판정(Arbitral Award)을 내리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적대감을

법학회, 2011, p.212.

21) 우광명·서민교, 전계논문, p.280 재인용; Danny Ciraco, "Forget the Mechanics and Bring in the Gardeners", *University of Baltimore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Vol. 47, 2000, p. 68.

22) 장성원, 전계논문, p.p.39-40.

23) 박영길, 전계논문, p.98.

24) 박영길, 전계논문, p.93.

25) 박영길, 전계논문, p.93.

26) ADR 제도는 소송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송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ADR 제도이다.

27) 하홍준 외 4인, "지적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9, p.12.

완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²⁸⁾

ADR 중 협상(negotiation)은 국제거래에서 분쟁발생 시 제일 먼저 활용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친숙한 방법으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협상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탁월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해결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러한 해결방법에는 조정(conciliation)과 중재(arbitration)가 있다. 조정과 중재는 ADR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국가 공권력에 바탕을 두어 소송과 유사하게 엄격한 절차와 실정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그러나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된 판정의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정과 다르다.²⁹⁾ 이러한 점에서 국제거래 시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는 사법적 분쟁해결 분류에 포함되며 조정의 경우는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으로 분류된다.³⁰⁾

오늘날 중재는 소송과 유사하게 판정에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독자적 제도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더욱이 중재의 경우 실정법뿐만 아니라 업계관행, 형평과 선(善)도 중재판정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법원의 판단보다 구체적 사안에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³¹⁾ 이러한 이유로 중재는 소송보다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있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시 중재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서의 중재의 장점과 정당성

(1) 전문성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분쟁은 첨단기술과 관련 되어 있는데 법원이나 의회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법정 판단의 질과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

28) 박영길, 전계논문, p.98.

29) “중재는 당사자 합의로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Arbitral Award)을 내리는 중재인에게 분쟁해결을 일임시키는 분쟁해결 방법이다.”(장성원, 전계논문, p.28).

30) ‘중재의 정의’, 「위키피디아(다국적 온라인 백과사전)」, 접속일 2013.4.22, (<http://ko.wikipedia.org/wiki/%EC%A4%91%EC%9E%AC>)

31) 최송자, “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적격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 p.30.

다. 분쟁사실에 적용할 법률이 불명확하거나 시대에 뒤져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판사들은 기술적 전문지식과 지식재산권법 관련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은 증가하고 판결의 질은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The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CAFC는 항소사건만을 처리하는 항소법원으로 대부분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은 전문성이 부족한 1심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³²⁾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사인 Sayler에 따르면 CAFC가 다른 연방 항소법원보다 자주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데 한 때는 그 비율이 50%를 넘은 적도 있다고 한다.³³⁾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8년 특허법원을 설치하여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허심결취소소송만을 다루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특허침해 관련 소송은 일반법원에서 민사소송을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분쟁당사자는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법관에 의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과 기술을 이해하는 전문가(변호사, 기술자, 기업인, 교수 등)를 중재인이나 조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양당사자들에게 더 공정한 해결을 낳게 해준다. 더욱이 급격히 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원칙의 물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분쟁의 원인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2) 국제성

지식재산권은 인터넷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한 국가의 국경을 순식간에 넘나들며 창출 및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 관련 국가의 수는 여럿일 확률이 크다. 이처럼 여러 국가가 개입된 국제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재판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의 법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의 내용과 그 집행 정도가 달라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도 문제이며, 설사 준거법을 결정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을 각 나라마다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많다.³⁵⁾ 또한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빨라지고 경쟁이 가열화 되면서 국내외 기업들은 기업 간에 크로스 라이선싱, 특허풀과 같은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여 복잡하

32) 장성원, 전계논문, p.35.

33) Obert et al., "Intellectual Property Roundtable: A Discussion of IP and ADR", *Dispute Resolu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Vol. 60 no. 1, 2005, p.71.

34) 김용길, 전계논문, p.70.

35) 김용길, 전계논문, p.70.

고 장기적인 상업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국제거래에서 상업상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분쟁 해결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중재의 장점으로는 국제적인 분쟁 관계에서의 집행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안은 국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반면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은 1958년에 발효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일명 뉴욕협약)”에 의하여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그 집행력이 보장될 수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의 144개국 이 본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중재판정이 국제적으로 완전하게 집행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³⁶⁾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상사중재를 이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중재판정에 있어서 국제적 승인 및 집행이 보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우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신속성

중재는 중재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의 단순함과 유연함으로 분쟁해결의 신속성에 기여한다.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인용(admissibility), 관련성(relevance), 중요성(materiality)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중재인들은 분쟁사안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³⁷⁾ 이러한 중재의 간단한 증거 규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특히 유용하다. 법원의 경우 새로운 매체를 통한 문서를 증거로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공방이 일어날 수 있지만, 중재의 경우는 특정 사안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증거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³⁸⁾

신속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여러 나라에 걸쳐 발생한 복잡한 분쟁을 한 번에 결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여러 나라에 등록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될 때, 소송을 통한 해결은 각각의 관할국가에서 중복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대신 한 번의 중재를 통한 해결은 상당한 신속성과 경제성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중재는 소송사건이 밀려 있는 사법 시스템을 우회하

36) “국제중재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후진국의 기업일 때, 중재를 우리 중재법에 따라 중재를 실시하고 중재인에 의해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정의 집행을 후진국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하홍준 외 4인, 전계논문, p.11).

37) 장성원, 전계논문, p.36.

38) 하홍준 외 4인, 전계논문, p.8.

여 즉시 분쟁해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분쟁해결의 신속성은 바로 비용절감으로 연결된다. Paradise에 따르면 증거조사가 총 소송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퍼센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³⁹⁾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발생이 적다.⁴⁰⁾ 한국의 경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3년인데 반해 중재는 약 4-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¹⁾ 만약 휴대폰 시장과 같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분야에서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짧은 라이프 사이클 동안 소송으로 인해 지식재산권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후생의 입장에서 손해가 아닐 수 없다.⁴²⁾

(4) 비공개성

소송절차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과정 중에 영업비밀, 고객 명부, 재무 데이터, 시장 분석 자료 등 기업이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⁴³⁾ 더욱이 정보로 집약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정보의 보호가 생명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재의 경우 절차의 사적인 특성으로 비밀보호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어떤 증거도 일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의할 수 있고, 분쟁해결 절차의 존부나 배상액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어 사인의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⁴⁴⁾

3. 중재에 대한 비판

기업의 중요한 분쟁해결을 사인들의 손에 맡기는 중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39) Paradise, Gregg A., *Arbitration of Patent Infringement Disputes: Encouraging the Use of Arbitration Though Evidence Rules Reform*, Fordham L. Rev. 64, 247, 1995, pp.253-254.

40) 미국 특허소송에서는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주된 원인은 증거개시(Discovery)제도에 의해 소송당사자는 상호 준비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또한 그 준비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그 준비작업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하홍준 외 4인, 전계논문, p.52).

41)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2004, p.5.

42) 김상찬·이연화, 전계논문, p.98.

43) 소송은 공개주의 원칙으로 기업의 비밀 등 공개를 꺼려하는 정보들이 공개되어 대외 신용도가 침해되기 쉽다.

44) 장성원, 전계논문, pp.40-41.

많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중재의 이점들이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재 판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가 불가능한 최종적 판정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정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표 11 참조). 물론 강행법규위반이나 당사자무능력 등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항소가 가능하지만, 중재인의 실제적 진실 파악에 대한 실수를 시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⁴⁵⁾

또한 중재는 부적절한 중재조항이나 중재인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판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중재는 그 존재와 형태가 전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에 의존하기 때문에,⁴⁶⁾ 당사자들이 중재조항들을 잘못 구상하거나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비효율적인 중재절차를 받아들이게 하고 원치 않는 장소에서 중재를 진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중재조항 자체의 유효성에 도전하도록 할 수 있다.⁴⁷⁾ 이 외에도 국제분쟁에 있어서 경험이 미숙한 중재인이 대단위 분쟁규모에 부담을 느껴 당사자의 주장을 무한정 받아들이거나 또 중재절차에 대한 세부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중재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지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⁴⁸⁾

보다 근본적인 비판은 지적재산권 분쟁의 국제중재의 결과가 해당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중재의 적격성과 관련이 있다.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상호, 영업비밀 등의 비등록 지식재산권의 경우 중재의 대상이 되나,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같은 등록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중재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⁴⁹⁾ 등록지식재산권의 중재적격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된 분쟁과 침해에 대한 분쟁은 보편적으로 중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유효성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적격성에 대한 논란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특히 특허권은 관할 행정관청인 특허청에 의해서 심사를 거친 후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권리의 효력유무에 대한 분쟁은 사법상의 분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인인 중재인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⁵⁰⁾ 일례로 EU의 경우 특정 법원에서는 The Brussels I

45) 하홍준 외 4인, 전계논문, p.11.

46)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중재절차는 중재규칙을 자신들의 특정한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으며, 중재인은 적절한 방식으로 그러한 틀을 맞추어 중재를 수행할 권한이 주어진다(장성원, 전계논문, p.45).

47) 장성원, 전계논문, p.45.

48) 현대자동차와 포르투칼 회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두 기업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때 소요되었던 기간은 약 5년으로 장기간 진행되었었다(하홍준 외 4인, 전계논문, p.11, 각주 8).

49) 오석웅, 전계논문, p.211.

50) 최송자, 전계논문, p.32.

Regulation 제22조(4)에 따라 등록 지식재산권의 존속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⁵¹⁾

이처럼 몇몇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중재적합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중재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많아 중재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⁵²⁾ 중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조정과 중재의 중간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⁵³⁾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되 조정의 효력이 당사자간에 일정한 기일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소송보다는 이로운 점이 매우 많은 ADR이 국내 전반에 걸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ADR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었을 때, 분쟁 당사자들은 소송보다는 ADR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V.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ADR 기관 현황

국제중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의(ad hoc)중재와 국제기관을 이용한 중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⁵⁴⁾ 임의중재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재기관에 의한 감독, 공식적인 집행절차 및 기한(시간계획)등에 대한 제약이 없다.⁵⁵⁾ 따라서 임의중재에서 중재인은 절차의 순조로운 진행을 당사자들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된 거래관계를 갖고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지역범위를 갖는 당사자들이 임의중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⁵⁶⁾

51) 강수미, “지적재산권분쟁에 있어서 중재의 대상적격”, 『민사소송』, 제14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p.146.

52) 일본의 경우 산업재산권에 대한 중재센터 만들기는 했으나 1년에 10건 미만이고, WIPO와 같이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10건 미만의 통계수치를 보여주고 있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ADR(대안적 분쟁해결), 글로벌 지식재산분쟁 해결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13권,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2013, p.21).

5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제논문, p.22.

54) "중재는 각국마다 중재기관이나 그 절차규칙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데 중재진행절차에는 상설중재기관이 수행하는 기관중재 또는 '제도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와 비상설적인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절차 규칙 등이 정하여지는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가 있다"(김용길, 전제논문, p.68).

55) 장성원, 전제논문, p.49.

56) 상대방의 성향이나 행동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수록 중재절차의 집행이 어려울수록, 상대방의 법, 문화, 언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임의중재보다는 집중화된 중재기관을 선택한다(장성원, 전제논문, p.50).

반면 국제기관을 통한 중재는 국제기관 자체의 중재규칙에 따르나 중재의 유연성은 임의중재보다 작으나, 분쟁 이해관계자들의 선의에 의한 결정보다는 중재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급속히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지식재산 분쟁은 임의중재를 이용하기 보다는 국제기관을 통한 중재의 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WIPO를 비롯한 여러 국제중재기관은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하여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무수히 얽혀있는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분쟁해결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IV에서는 국제중재기관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ADR 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해외 주요 ADR 및 중재기관의 현황

(1)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중재법원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19년 무역과 투자, 재화와 서비스 시장 개방, 자본의 이동 자유화를 촉진하여,⁵⁷⁾ 세계 비즈니스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기업 및 사업자 대표들로 조직된 국제기관이다.⁵⁸⁾ ICC는 1923년 국제상업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ICC 국제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을 설치했으며, 현재 가장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구로 성장하였다.⁵⁹⁾

ICC 국제중재법원은 문화적 중립성 및 개방성과 불편부당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원을 ICC의 약 60여개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ttee)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한 인사들 중 ICC 최고의결기구인 ICC Council에 의해 임명한다.⁶⁰⁾ 법정은 당사자들을 심리하거나 사실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대신 법정은 법정 사무국(the Court's Secretariat)⁶¹⁾의 지원을 받아 중재절차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중재판

57) ICC의 주요 사업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제경제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무역, 운송, 금융, 보험, 마케팅, 통신, 산업재산권, 에너지, 상사중재, 조세, 환경 등 국제경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및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 및 무역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김상찬·이연화, 전계논문, p.104).

58) 장성원, 전계논문, p.104.

59) 일반적으로 국제중재 법률시장은 빅 3로 일컬어지는 ICC(국제상업회의소·프랑스 파리), AAA/ICDR(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미국 뉴욕), LCIA(런던국제중재법원·영국 런던)이 주도하고 있다.

60) 장성원, 전계논문, pp.51-52.

61) 법정 사무국은 6개 팀으로 조직된 약 4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재가 신청되면 사무국장은 6개 팀 중 하나를 당하고 그 팀은 해당 사건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지을 향상시킨다.⁶²⁾

ICC 국제중재법원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200여건의 새로운 사건을 다루었고, 이 숫자는 1994년 384건, 1999년 529건, 2004년 561건, 2007년에는 59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말 기준으로 19,000건 이상의 중재사건을 맡았다.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지적·국제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WIPO, WTO, WCO, UNECE, APPI 및 LES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하고 있다.⁶³⁾

(2)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

미국중재협회(AAA)는 조정, 중재, 선거, 기타 소송외적인 해결절차 등의 상사중재의 이용을 지원하는 협회로 1926년 뉴욕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되었다.⁶⁴⁾ AAA는 1991년 국제중재규칙(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을 제정하고 1996년 국제사건만을 전담하여 다루는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ICDR)를 설치하였다. 국제사건 신청 수가 1995년 일 년 동안 180건에서 ICDR 설치 후 일 년 동안 28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는 600여 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⁶⁵⁾

ICDR은 국제적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아일랜드 더블린에 해외 사무소를 처음으로 열고, 유럽지역에서 ICDR 서비스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 AAA는 8,000명이 넘는 중재인 명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누적처리 사건 수는 2,000,000건을 넘는다.⁶⁶⁾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기관의 노력으로, AAA는 세계최대 규모의 ADR 서비스 기관으로 상업분쟁해결의 우수성에 대한 명성을 갖고 있다.⁶⁷⁾

(3)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은 런던 시정부와 런던 상공회의소 주도하에 1892년 런던

62) 사무국은 법정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률 및 사시 이슈들을 제공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들을 분석 및 연구하여 법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다.

63) 장성원, 전계논문, p.104.

64) 미국의 ADR 제도의 유형은 사법형 ADR과 민간형 ADR로 나뉘어지는데 AAA는 민간형 ADR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미국에서의 민간형 ADR은 다수의 민간형 ADR기관, ADR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로펌, 조정센터 등이 매우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데, 주요한 기관으로는 미국중재협회(AAA), 사법조정중재회사(JAMS), 분쟁해결협회(ACR), 온라인분쟁해결회사(OR), 커뮤니티조정센터, 전국중재포럼 등이 있다(김상찬·이연화, 전계논문, p.105).

65)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nnual Report*, 2004, p.6

66) <http://www.adr.org/overview>

67) 함영주, “분쟁해결방법론”, 진원사 2010, p.356.

중재회의소(London Chamber of Arbitration)로 설립된 기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기구이다.⁶⁸⁾ 이후 1903년 런던중재법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국제 중재의 증가를 반영하여 현재의 이름인 LCIA로 이름을 고쳤다. LCIA는 유한회사로(Limited company)로 회사(Company), 중재법(Arbitration Court), 사무국(Secretariat)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진은 분쟁해결에 관여하지 않고 비즈니스 운영 및 개발에 주력한다.⁶⁹⁾ LCIA의 특징으로는 완전한 기관중재와 임시중재(ad hoc)사이의 중간 형태라는 것이다.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산업재산권을 다루는 파리협약(1883)과 저작권을 다루는 베른협약(1886)의 관리와 사무기구상의 문제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WIPO는 BIRPI(United International Bureaus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의 전신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조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근거해 1974년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다루는 UN의 전문 기구가 되었다.

WIPO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제 상업분쟁을 ADR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1994년 국제사무국 산하에 WIPO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설치하여 조정, 중재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WIPO는 국제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 '간이중재(expedited arbitration)', '세계지적 소유권기구 조정규칙에 의한 조정', 그리고 분쟁이 중재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속조치로서 '조정과 중재가 연계된 분쟁해결제도(med-arb)' 4개의 분쟁해결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⁷⁰⁾ 알선(good offices)의 서비스도 담당하고 있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적합하도록 UNCITRAL 중재규칙과 조정규칙을 근거로 하여 WIPO조정규칙, WIPO중재규칙, WIPO 신속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있다.⁷¹⁾ 특히 비밀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재하는데 요구되는 절차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데 힘쓰고 있다. 일례로 WIPO중재규칙은 중재의 경우 문제가 되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조정에 관한 일반적 기밀 보호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유효성이 높은 국제절차로 평가되고 있다.⁷²⁾

68) 김용길, 전계논문. p.77.

69) 장성원, 전계논문, p.52.

70) 이상정, "ADR을 통한 지적재산권분쟁 해결의 현황과 과제", 「비교사법」, 제13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p.168.

71) 김상찬·이연화, 전계논문, p.105.

WIPO 센터는 경험이 풍부한 기술적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70여 국가 출신의 1000명 이상의 조정인 또는 중재인 명부를 제공하고 있다.⁷²⁾

2. 국내 ADR 기관의 현황 (대한상사중재원 : KCAB)

현행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주요한 ADR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등이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만이 중재를 행하는 기관이고 나머지는 조정을 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행정형 ADR기구라고 할 수 있다.⁷⁴⁾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중재를 전담하는 별도의 중재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대한 상사중재원이 국내 및 국제중재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중재를 담당하는 ADR 기구는 대한상사중재원(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유일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3월 22일 중재법을 제정 및 공포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내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설립된 것이 시초이다. 이후 1970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명칭을 대한상사중재협회로 변경하였으며, 1980년 지금의 이름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바꾸고 기구를 확대·개편하면서 국내 유일의 상설중재기관으로 오늘 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⁷⁵⁾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확대개편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건수가 부진한 상태이다. 이는 기관의 독립성이 약하고 조정업무와 동시에 단속업무 등도 겸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당사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⁷⁶⁾ 중재제도를 도입한지 만 30년만인 1996년에 겨우 100건을 돌파하였으며,⁷⁷⁾ 현재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수치는 매우 작다. 다행스러운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62건, 2011년에는 323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분쟁 및 기술·지식재산권권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 신청 건수는 1997년부터 최근 10년간 매년 10건 내외로서 그 수치는 매우 작다.⁷⁸⁾

72) 하홍준 외 4인, 전계논문, pp.93-98.

73) 장성원, 전계논문, p.105.

74) 김상찬·이연화, 전계논문, p.107.

75) 대한상사중재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cab.or.kr>/중재원소개/연혁)참조.

76)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중재·조정중심으로",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 pp.155-156.

77) 하홍준 외 4인, 전계논문, p.35.

V. 국내 중재기관의 활성화 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소송보다는 이점이 더 많은 ADR 제도에 대한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ADR 제도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⁷⁹⁾ 이처럼 국제적 차원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ADR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지식재산권 분야의 ADR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물론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국제 중재를 담당할 수 있는 국내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해외 주요 국제 ADR기관과 같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전문성, 중립성, 신속성, 비밀보호 과정에서 해외 주요 ADR 기관들의 비교우위를 살펴보고, KCAB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있는 국제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성 제고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각 기관들의 경쟁우위를 살펴보면, 우선 ICC와 WIPO는 세계 여러 국가 출신의 전문가를 구성원 및 중재원으로 확보하여 운영함으로써, 문화적·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ICC의 경우 60여 국가 출신으로 구성된 법정에 의해 중재절차와 중재판정을 검토 및 감독하고 있으며, WIPO는 UN기구로서 70여 국가 출신의 중재인 명부를 제공하며 국제기관의 특성이 강하고 아울러 높은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⁰⁾ 이처럼 국제중재기관으로 문화적·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신의 국가들로 구성된 중재인 및 구성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 등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ICC의 경우 2010년 설문조사 결과 중립성과 국제화 수준이 다른 국제 중

78) 대한상사중재원의 년도별 지식재산권 관련 중재신청건수 및 액수를 보면 1997년 1건(0\$), 1998년 4건(2,012천불), 1999년 2건(1372천불), 2000년 0건(0), 2001년 12건(3,084천불), 2002년 8건(32,903천불), 2003년 2건(7,505), 2004년 9건(11,795천불), 2005년 8건(12,083천불), 2006년 10건(4,064천불), 2007년 12건(8,336천불), 2008년 17건(10,414천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하홍준 외 4인, 전계논문, p.43).

7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계서, p.23.

80) AAA의 경우 대부분의 당사자가 미국인이며 LCIA의 경우 중재인의 상당수가 영국인이다(장성원, 전계논문, p.64).

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가장 선호하는 기관으로 조사되었다.⁸¹⁾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외국업체 간 분쟁사건의 국내유치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분쟁의 대부분도 선진 외국중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⁸²⁾ 따라서 KCAB가 국제적 중재기관으로서 한 단계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중재인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에게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해외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KCAB는 외국의 주요 중재기관 및 국제기관들과의 대외협력을 통해 국제적 중재사건의 신속하며 효율적 절차진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일례로 ICC의 경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재권 관련 국제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KCAB도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동 기관을 이용하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국제적 중재기관으로서의 신뢰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공정한 해결을 이끌어 주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⁸³⁾

5월 27일 개소 예정인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도 KCAB가 대외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의 국제중재회의장인 서울국제중재센터는 국제중재를 진행하는 국제중재기관에게 중재법정 시설을 빌려주는 곳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국제분쟁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울국제중재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KCAB는 서울국제중재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해외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회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전문 인력풀 확보 및 다양한 중재제도 개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처리의 실적과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AAA와 ICC가 경쟁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 기술적/과학적으로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처리가 요구되는데, WIPO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춘 중재규칙을 갖고 있어 전문성 있어서 경쟁우위에 있다.⁸⁴⁾ 물론 WIPO는 다

81)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0, pp.22-23.

82) 김상호, 전계논문, p.124; 우리 기업은 국제계약 체결 시 대한상사중재원보다 외국의 ADR기관에서 중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연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현황과 발전방향", 「중재」 제317호(2005·가을), 대한상사중재원, p.6).

83) 김상호, 전계논문, p.135.

른 기관에 비해 아직 실적과 경험이 부족하나, 지식재산권 전문 ADR기구로서 이에 맞는 중재규칙을 통해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Manpower Pool)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상기 전문화된 국제기관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KCAB의 전문성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크게 전문 인력풀의 부족과 실적 및 경험의 부족이다. KCAB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해외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분쟁현안에 정통한 중재인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실적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법원 연계형(court-annexed) ADR 제도의 활성화 등 다양한 ADR제도의 개발과 적용이 중요하다. ADR이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성공적으로 운용되는 ADR은 법원 연계형(court-annexed) 내지 법원 부속형이라 할 수 있다.⁸⁵⁾ 이는 법원이 지식재산권 사건의 유형에 따라 ADR 제공기관에 회부하여 ADR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ADR 제공기관은 이러한 기회를 살려 실적과 전문성을 쌓아 나가면서 독립의 사건도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ADR제도에 의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원과 ADR 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ADR 제도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중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중재규칙 개선을 통한 신속성 및 비밀보호를 강화

2010년 국제중재 설문조사(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에 의하면 중재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정적인 법적 인프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⁸⁶⁾ 즉 국제적인 ADR기관으로써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탄탄한 법제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 만큼, 최근 들어 각 국가들의 ADR 기관들은 국제중재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재규칙을 새로이 개정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⁸⁷⁾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신속한 처리와 비밀보호는 상당히 중요한데, 각 기관들의 중재규칙들을 살펴보면 우선 비밀보호 측면에서는 LCIA와 WIPO가

84) 일례로, WIPO 중재규칙 Art.49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재실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Art. 50은 재산, 기계, 시설, 생산라인, 모델, 필름, 재료, 제품 또는 공정 등 어느 장소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장성원, 전제논문, p.p.57-58).

85) 박종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ADR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제15권 제4호, 한국유통경영학회, 2012, p.88.

86)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0, pp.17-18.

87) 김태훈, 차경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 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2, p.4.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중재기관에 비해 LCIA의 중재규칙은 엄격한 비밀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WIPO의 중재규칙도 Art.73부터 Art76까지 광범위하고도 엄격한 비밀보호를 규정하고 있다.⁸⁸⁾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비밀보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KCAB가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을 유치하고 당사사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비밀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중재규칙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속성에 대한 중재규칙을 살펴보면 ICC, LCIA 및 AAA의 경우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반면, WIPO는 신속중재규칙(WIPO Expedited Arbitration Rules)을 마련하여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⁸⁹⁾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필요하다. KCAB는 1989년 중재규칙에서 처음으로 신속절차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 개정을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중재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⁹⁰⁾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었을 때 국제중재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VI. 결론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기업들은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누가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을 가열화 시키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글로벌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분쟁 사안이 기술적·과학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 분쟁은 급증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게도 분쟁의 결과는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한 기업의 원천이 되는

88) 장성원, 전제논문, p.60.

89) “WIPO는 신속중재규칙(WIPO Expedited Arbitration Rules) Art.56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방어서면 제출일 또는 중재판정부의 설립일 중 늦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리절차 종결이 선언되어야 하고 심리종결로부터 1개월 내에 중재판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성원, 전제논문, p.59).

90) 박범철, 주이화, 심상렬, “신속절차에 관한 아시아 4개국의 국제중재규칙 비교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 p.194.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도 있으며 무형자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은 공정하고도 전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분쟁은 통상의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지만, 중재와 같은 ADR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 소송보다는 ADR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ADR의 논의 및 운영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ADR 기관들을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ADR 이용 및 인식이 낮아,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효과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국내 기업들이 소송보다는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 ADR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 ADR 기관이 분쟁 당사자들에게 국제적 중재기관으로서 신뢰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공정한 해결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해외 우수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중재제도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중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비밀 보호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재규칙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이 전문성, 중립성, 신속성, 비밀보호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 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나가리라 믿는다.

참 고 문 헌

- 강수미, “지적재산권분쟁에 있어서 중재의 대상적격”, 「민사소송」, 제14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 김용길, “지식재산권분쟁의 재판외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
- 김상찬·이언화, “지적재산권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법학연구」, 제47권, 한국법학회, 2012.
- 김연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현황과 발전방향”, 「중재」 제317호(2005·가을), 대한상사중재원.

- 김태훈, 차경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2.
-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2004.
- 박범철, 주이화, 심상렬, “신속절차에 관한 아시아 4개국의 국제중재규칙 비교 연구”, 「중재학회」,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
- 박영길, “동북아 지적재산권분쟁해결을 위한 ADR센터 필요성에 관하여”, 「지식재산연구」, 제4권 제3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
- 박중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ADR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제15권 제4호, 한국유통경영학회, 2012.
- 손경한, “국제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 오석웅, “지적재산권분쟁과 중재제도”,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2호,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2011.
- 우광명 · 서민교, “지적재산권분쟁에 대한 ADR의 적응성”, 「한국무역학회지」, 제33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8.
- 윤선희, “일본에서의 지적재산 관련 중재제도”, 「법조」, 제573권, 법조협회, 2004.
-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중재·조정중심으로”,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
- 이상정, “ADR을 통한 지적재산권분쟁 해결의 현황과 과제”, 「비교사법」, 제13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 이재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규제체제”,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이현희, “한중일 3국의 중재제도의 조화를 위한 소고”,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
- 장성원, “ADR을 통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국제중재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정효진, “높아진 지적재산권 장벽”, 「동아일보」, 2009.10.8자.
- 채명석, “막대한 특허분쟁 소송비 내느니 차라리 美 시장 포기”, 「아시아경제」, 2008.2.20자.
- 최송자, “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적격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
- 하홍준 외 4인, “지적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ADR(대안적 분쟁해결), 글로벌 지식재산분쟁 해결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13권,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2013.

함영주, 「분쟁해결방법론」, 진원사, 2010.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nnual Report*, 2004.

Danny Ciraco, "Forget the Mechanics and Bring in the Gardeners", *University of Baltimore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Vol. 47, 2000.

Obert et al., "Intellectual Property Roundtable: A Discussion of IP and ADR", *Dispute Resolu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Vol. 60 no. 1, 2005.

Paradise, Gregg A., *Arbitration of Patent Infringement Disputes: Encouraging the Use of Arbitration Though Evidence Rules Reform*, *Fordham L. Rev.* 64, 247, 1995.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0.

ABSTRACT

Promoting an Arbitr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ses

Ju-Yeon Lee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perceived as the key element of creating added values and securing competitiveness, the resul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f companies. As seen from above strong points of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in Chapter II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increasingly tend to be resolved by ADR rather than litigation. Discussions about and operation of ADR are already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many countries, and major ADR institutions have been acquiring experience in a varie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To enhance the use and recognition of ADR as the way of resolv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in Korea,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three ways. First, domestic ADR institution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will need to establish cooperative systems with prominent overseas institutions to lead the disputing parties to fair resolutions as well as to instill tru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econd, they will need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arbitration systems throughout society by developing and applying a variety of arbitration systems as well as securing a pool of professionals. Finally, the arbitration rules will need to be continuously improved to deal with disputes promptly and reinforce privacy protection.

Key Words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stitutions, KCAB